

지방자치단체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담당자 역할

(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선 적용)

상황접수

상황전파

대응조직 현장파견*

비상대응기구 운영**

재난수습***

* 상황관리관 현지 파견,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/ **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단체장), 현장통합지원본부(부단체장), 상황관리반, 현장응급의료소 / *** 임시생활, 심리, 법률, 장례 등 피해자(가족) 지원, 피해시설 복구 지원

구분

주요조치사항

STEP 01 사전대비

- 직원,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실시간 정비
-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
- 대형화재 대응능력 강화(직원 및 관계기관 합동교육, 훈련 등)

STEP 02 상황접수

- 사고상황 접수(소방서, 경찰서, 중앙재난안전상황실, 유관기관, 시민 등)
 - 일시, 장소, 사고상황, 피해 내용, 장비·인력 동원사항, 조치사항 등

STEP 03 상황전파

- 상황 보고 및 전파
 - 보고/전파대상 : 단체장, 부단체장, 실·국·과장 /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*
 - (1보) 상황 접수 즉시 사고내용 보고
 - (2보~) 피해 및 구조상황, 전망 등 추가
 - 재난문자 전송(화재 확산, 연기 흐름방향 등 고려 / 대피, 우회 통행, 청문 닫기 등)
- 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대응반 가동
 - 상황관리관 현지 파견(팀장급 포함 2명 이상 / 현장과 원거리 경우 인근 읍·면·동 직원협조) - 현장응급의료소 설치·운영 요청(보건소팀장급 이상)
 - 상황관리관 재난상황 파악
 - 피해정도*, 요구조차 현황 및 구조 전망, 주민(근로자) 대피 현황 * 인명피해(사망자수, 중상자수, 부상자수), 재산피해(건물 규모 및 피해 규모, 용도, 구조 등)
 - 위험물 인접 여부 등 주변 상황 및 개략적인 피해확산 가능성 등

STEP 04 대응기구운영

- 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(부단체장 주재, 현장상담소 포함 구성)
 - 장비·인력 수급상황 파악 및 지원 등 화재진압 및 구조·구급 상황 지원
 - 피해자, 구조자 및 요구조차 현황 파악 및 주변 대피대상 주민 유무 및 대피 유도
 - 화학약품·가스·유류 등 위험물질 처리 건물 여부 및 인접 여부
 - 경찰 등 협조 피해자 신원 파악 및 가족 연락(외국인의 경우 해당 대사관에 연락하고 불법체류 여부 등 파악) ※ 재난안전법 제74조의3(정보제공요청)
 - 피해가족, 언론 대상 수색·구조·구급상황 브리핑*(피해가족 → 언론사 順)
 -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주관, 언론청구 단일화, 오보·유언비어 즉시 대응, 개인정보 등 누설 방지
 - 자원봉사 활동(생수, 음료수 지원 등)
 - 상황보고서 작성 및 일일상황회의 실시(매일 2회 이상)
 - 출입통제, 교통, 가스, 전기, 통신, 승강기 등 유관기관 긴급안전조치 요청
 - 2차피해 가능 여부, 건물 붕괴 등 대비 주변 출입 통제 및 대피 등 안전조치
 - 건물구조·용도·규모, 임주자 수, 불법 여부 등 피해건물 현황
 -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주관 수색 및 구조상황 등 브리핑(가족 → 언론사)
 - 피해자(가족) 상담 및 애로사항 지원
- 현장응급의료소 설치·운영(보건소장 총괄)
 - 사상자 중증도 분류,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현황 확인, 의료장비·의료인력·의약품 수급상황 파악 및 확보,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,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병원 확보, 임시영안소 설치
-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(본부장: 단체장)
 - 재난상황관리, 긴급생활안정 지원, 시설복구, 폐기물처리 등 재난현장 정비, 자원봉사자 관리, 구조·구급 지원, 재난 홍보 등 재난수습 총괄관리

STEP 05 재난수습

- 사망자 지원
 - 1:1 전담공무원 배치(팀장급 이상, 운영총괄은 사회복지 국·과장)
 - 장례절차 등 안내, 지내본 심의를 통해 장례비 지급보증 또는 선지급*
 - 생활근거지 소재 장사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피해가족 파악·지원
 - 장례식장, 화장장, 봉안당 등 안내 및 알선
 - 원인자 부담원칙, 재해구호기금 선 사용, 후 구상권 청구
 - 장례일정, 안치장소 등 파악 지원
 - 합동분향소 설치·운영(필요시)
- 부상자 지원
 - 화상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소개 및 애로사항 파악·지원
 - 지원기준 범위내 지내본 심의를 통해 의료비 지원 또는 지급보증
 - 중상자 입원 병원 전담공무원 배치 및 심리지원
 - 부상자 이송병원 확인 및 입·퇴원 현황관리
- 피해자(가족) 지원
 - 피해가족 연락 및 사고현장 등 방문 지원
 - 이재민 현황 파악, 장·단기* 숙소지원, 식사 지원 * 장기숙소: 공공임대, 전세임대 지원 등, 단기숙소: 민간숙박시설 등
 - 재난구호센터 제공, 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 지원
 - 심리지원 및 상담창구 운영(건의사항 파악 지원, 산업재해보상, 긴급경정안정자금, 법률지원, 보험 및 금융지원 등)
 - 보험가입* 여부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, 보험사 연락, 보험·보상 관련 설명회 개최(보험사 참여) 등 보험금 수령 지원
 - 시민안전보험,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보험,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제, 산재보험 등
 - 자원봉사 활동(건물 진해 처리, 청소, 세탁 등)
 - 생활안정지원: 구호금, 생계비, 주거비, 구호비, 교육비 등
 - 긴급복지지원: 생계유지비, 의료서비스, 임시주거, 사회복지시설, 교육비 등 대상자(중위소득 75% 이하) 지원
 - 각종 세금감면 검토
 - 임시판매시설(전통시장, 청과물시장 등) 설치·운영
- 피해복구 지원
 - 긴급안전점검(진단), 폐기물처리(위험물 제거), 전기·통신·가스·수도 등 긴급복구 지원